

環境保全法の概要

權 肅 杓

延世醫大教授·藥博
學校保健協會理事

1963年 우리나라의 第1次 經濟開發 5個年 計劃을 實施함에 있어서 將次 豫測되는 環境汚染 公害를 未然에 防止하기 위한 公害防止法이 公布되었다. 이 法은 公害의 原因이 되는 煤煙가스, 粉塵, 騒音, 振動, 惡臭, 廢水 등이 工場으로부터 排出되는 것을 抑制하기 위해서 排出施設을 主로 規模가 比較的 큰 工場施設을 指定하고 個個施設에서 排出되는 大氣 水質汚染 物質과 騒音 振動의 許容 限界를 定하였다. 그리고 그 程度를 超過하는 施設에는 公害防止施設設置, 施設의 改善, 操業停止命令, 改修하여도 排出이 抑制되지 않는다고 認定되는 境遇에는 移轉命令等 行政措置를 取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公害防止法 施行中에 法에 規定되어 있지 않은 새로운 有毒物質의 排出이 公害를 惹起하는 것이 認定되어 1971년에 特定有害物質의 種類를 擴大適用하는 公害防止法 改正을 보게 되었고 모든 產業場이 操業前에 環境物 排出施設의 設置에 事業許可를 받고 施設後에 檢査를 받도록 規定되어 從前의 公害의 事後對策에서 事前對策으로 轉換하게 되었다. 이러한 一連의 規制에도 不拘하고 우리나라의 諸都市와 工業地域은 勿論 河川海水汚染은 產業發展과 經濟伸長과 平行해서 大氣水質 土壤汚染은 深化되고 農水産物山林의 被害와 都市의 給水源인 河川汚染, 大氣汚染에 의한 健康障害가 增加하고 있어서 不可避하게 公害防止 根本對策을 確立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公害防止의 根本 對策은 公害源을 規制團束하는 消極的 對策에서 國土環境을 計劃의 으로 管理하는 積極的이고도 綜合的인 對象이 要請된다.

1977年 12月 31日 公布된 環境保全法(第3078號)은 從前의 公害防止法은 1978年 6月末로 廢止하고 舊法의 缺陷을 大幅 補完하여 美日에서 採擇하고 있는 環境計劃에 立脚한 規制와 政府와 企業의 責任을 明示한 法이라고 하겠다.

1. 環境保全 定義

環境保全法의 主要 規定의 內容은 舊法의 目的에서 「大氣 水質汚染과 騒音 振動 惡臭 등으로 因한 保健衛生上의 危害를 防止하고 環境을 適正하게 保全한다」는데 追加해서 土壤汚染을 插入하여 土壤汚染의 原因도 規制 할 것을 明示한 것이다. 여기에서 環境이라 함은 「自然狀態의 自然環境과 사람의 日常生活과 密接한 關係가 있는 財産의 保護 및 動植物의 生育에 必要한 生活環境」이라고 規定하여 自然과 生物 全般에 미치는 環境影響까지를 規定對象으로 할 것을 明示한 것이다.

2. 環境基準과 規制

法 第4條에 保健社會部長官은 環境汚染으로부터 人間의 健康을 保護하고 快適한 環境을 保全하는데 必要한 環境基準을 設定하도록 規定하고 있다. 이것은 指定된 環境保全 地域內에서 大氣 水質 土壤의 汚染의 限度를 人間의 健康保護와 快適狀態로 維持하고자 하는 環境計劃과 行政의 目標을 設定하는 것으로 이 目標 達成을 위해서는 土地利用과 施設設置의 制限(第8條), 都市開發 產業立地 造成과 에너지 開發 등의 事前合意(第5條), 排出許容基準(第14條), 排出施設의 設置 義務化와 事前許可(第15條), 排出施設의 檢査(第16條), 違反 業所의 改善命令(第17條)과 操業停止 命令(第18條), 排出施設의 移轉命令等의 行政措置를 取할 뿐만 아니라 事業物에서 排

出되고 大氣汚染物이나 水質汚染物이 第14條의 排出許容基準에 違反되지 아니하는 데에도 不拘하고 環境汚染狀態가 環境基準을 超過하여 그 結果가 住民의 健康과 生物의 生育 및 財産에 重大한 危害를 가져올 憂慮가 있다고 認定되며 保健社會部長官은 그 區域內의 事業場에 對해서 大氣水質汚染物質의 排出量 總量 規制할 수 있게 (第26條 및 第36條)하고 必要하면 事業場에 對해서 燃料使用을 制限하거나 變更을 命할 수 있게 했다(第27條). 이 環境基準을 設定한 것은 公害防止와 環境保全의 維持水準을 行政的으로 設定한 것이지만 모든 汚染物과 環境汚染의 影響을 現在 다 把握하지 못하기 때문에 將次 새로운 汚染物에 對해서 必要 할 때에는 基準項目을 擴大 適用할 수 있고 따라서 規制의 對象도 擴大될 可能性이 있다.

3. 環境評價

環境基準의 達成 與否를 評價하기 위해서는 保健社會部長官과 市道知事は 各各 全國과 管轄區域의 環境汚染實態를 測定網을 設置해서 常時 測定할 義務가 있다(第6條). 그리고 事業者는 自身の 事業所에서 排出되는 汚染物質을 自家測定하여 記錄해서 保管하도록 되어 있다(第22條).

4. 特別對策地域과 特別綜合對策의 樹立

이러한 計劃과 規制 그리고 評價 保健社會部長官이 人口 및 産業이 集中하여 環境 汚染이 顯著하거나 顯著하게 될 憂慮가 있는 地域을 特別對象地域으로 提定하는 데에서부터 始作된다. 管轄 市道知事에게 그 地域內의 環境保全을 위한 特別綜合對策을 樹立하여 施行 할 것을 命하게 되며 市道知事は 그 對策을 樹立하여 保社部長官의 承認을 받아야 하게 되어있다(第7條).

5. 影響圈의 綜合管理

大氣 및 水質汚染이 市道知事の 管轄區域을 넘어 擴範圍한 影響을 미칠 때와 그러한 可能性이 있을 때에는 保健社會部長官은 環境汚染의 狀態調査와 防止對策을 講究하기 위해서 行政管轄區域에 不拘하고 大氣汚染의 影響圈 地域과 水質汚染의 水系別 水域管理를 할 수 있게 第13條의 規定은 第6條의 全國의인 環境汚染實態 把握을 위해서 保健社會部長官이 全國에 測定網

을 設置 運營하는 것과 關聯하여 廣域化 해가는 環境汚染을 綜合的으로 管理하는 새로운 制度가 마련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過去에 漢江 洛東江에서 頻繁히 發生되는 水質汚染이 上流의 他市道에서 廢水와 下水를 放流하므로써 發生되었을 때에는 被害區域의 行政權이 排出區域에 미치지 못하고 放置되어 繼續的인 被害를 받은 例가 있다.

6. 自然環境保全

自然環境의 保全을 위해서는 保社部長官은 生物의 生育環境을 調査하고 그 結果 特別히 保全하여야 할 必要가 있다고 認定되는 地域은 自然環境保全地區로 指定할 것을 建設部長官에게 要請할 수 있게 되어있고(第9條) 또한 特定有害物質 또는 産業廢棄物 動物의 死體 糞尿 塵芥 또는 染泥 등을 公共水域 또는 山林에 廢棄하는 行爲나 自然環境毀損 또는 自然環境 保存을 위한 施設物을 破損하는 行爲는 禁止(第37條)되어 있으며 公共水域의 占用 또는 埋立許可하고자 하는 主務官廳은 公共水域의 環境染汚과 그것으로 인한 保健衛生 危害를 防止함에 必要한 條件을 붙여야 하도록 했다(第38條).

7. 處理施設의 設置提示와 放流水 水質基準

水質染汚을 일으키는 下水 또는 糞尼終末 處理는 保健社會部長官이 必要 하다고 認定 할 때에는 市道知事에게 下水道 廢棄物의 處理 施設을 設置 整備하도록 提示할 수 있고(第40條) 또 市道知事は 處理施設에서의 放流水는 保健社會部長官이 規定한 放流水 水質基準에 適合하여야 하게 되어있다(第39條).

8. 土壤汚染防止

特定 有害物質에 의한 農耕地 草地의 汚染防止를 위해서 必要 할 때에는 農耕地에 流入하는 用水의 水質基準을 定하거나 覆土 削土 등의 措置를 市道知事が 할 수 있으며(第41條) 特別對策地域內에서 土壤 또는 水域이 特定有害物質에 의하여 汚染되어 있다고 認定될 때에는 土地 所有者 또는 栽培者에 對하여 當該 汚染地域에 對한 農水産物 등의 栽培를 制限할 수 있다. (第42條)고 規定하고 있다. 이 栽培制限의 規定은 土壤이 카드뮴 水銀 農藥 등으로 汚染되었을 때에

는農産物의種類에따라이들染汚物質이農作物에吸收되어人體에被害를줄可能性이있기때문이다.

9. 騒音振動의規制

市道知事は住民의生活環境保全을위해서必要하다고認定하면그地域을騒音規制地域으로指定告示하며(第33條)保健社會部長官의承認을얻어서騒音規制基準을定하게되어있다.(第34條). 이러한指定地域의告示는都市住居地, 遊園地, 觀光地域, 古蹟들이該當되며必要할때에는野生物, 保護地域(自然保全地區)等에도實施될수있다.

또騒音振動防止를위해서騒音規制地域內에서는特定工事를事前申告하고騒音振動이規制基準을超過할때에는作業時間의調整防止施設等を命할수있게(第35條)했다.

10. 自動車排氣의規制

自動車の排氣가都市大氣染汚의重大한原因이므로保健社會部長官은自動車와重機의排기가스煤煙等の排出許容基準을自動車種類別로定하게되었다(第27條)또市道知事は이들排기가스가사람의健康에重大한危害를가져올憂慮가있다고認定하면그地域의自動車通行을統制할수있게하고(第29條), 自動車製作者나輸入者에게許可의排기가스濃度基準을適用規制하며(第30條)自動車燃料添加제를添加할境遇 그것으로因하여人體에顯著한害毒性이있는物質例컨데鉛化合物이排出될때에는그添加劑의使用을規制할수있게하였다(第31條).

11. 惡臭發生禁止

保健社會部長官이定한地域內에서는適合한燒却施設이없이고무合成樹脂, 또는廢油等惡臭가發生하는物質의燒却은禁止하고있다(第31條).

12. 環境保全施設費의負擔

事業者는그事業活動으로因해서發生되는環境染汚을防止하기위해서國家또는地方自治團體가實施하고事業에必要한費用の一部또는全部를負擔하여야한다(第43條). 이때에各事業者가負擔할境遇에는事業活動의種類規

模및汚染物質의排出程度을基準으로하여負擔總額을配分한金額으로한다(第44條).

13. 防止施設業과産業廢棄物處理業

環境汚染防止施設의設計施工業을保健社會部長官의登錄制로하여(第47條)有資格者만이할수있게하였고産業廢棄物處理業은保健社會部長官의許可를받아야하고(第50條)廢棄할때에는汚染物質排出許容基準에適合한方法으로하여야한다(第51條). 단廢棄處理業者處理後에生成된廢棄物을營業場所外의場所로運搬하고자할때에는市道知事에게미리申告하도록되어있다(第51條2項).

廢棄物處理業者나事業者가自己事業에서生成된廢棄物을終末處理하는경우에는市道知事에게미리申告하고部令으로定한方法和基準에따라處理하여야한다(第52條).

14. 紛爭調停과被害賠償

環境汚染으로인해서紛爭이發生할때에는當事者는市道知事에게紛爭의調停을申請할수있으며市道知事は그것이管轄區域에限定된紛爭인境遇에는市道知事所屬下에있는地方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서調査委員으로하여금調査하고調整하며管轄區域外에도關係되는紛爭인境遇에는保健社會部長官所屬下の中央環境紛爭調整委員會에回送하여調整한다(第53—158條)紛爭은申請日로부터90日以內로하고調整調書는民事訴訟法第206條規定에의한和解調書와同一効力を갖게하였다(第59條).

事業場 등에서發生한汚染物質로因하여사람의生命또는身體被害가發하였을때에는事業者가그被害를賠償하여야하고事業場이2個以上이고原因事業場の責任이不分明할때에는各事業者가連帶賠償하도록無過失責任을規定하였다(第60條)

이것은被害者가競爭汚染의原因을立證하는것이거의不可能하기때문에取해진規定으로事業者가過失이없다고하더라도發生된被害를賠償하도록한因果關係의蓋然性を通用한規定이다.

15. 罰則의強化

<12페이지에 계속>

결핍성 빈혈도 중요하다. 회충, 십이지장충의 감염이 빈혈의 요인이 되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지만 특히 십이지장충(鈎虫)에 의한 실혈은 세 가지 요인으로 된다고 한다. 첫째는 십이지장충의 흡혈로 인한 빈혈인 바 1일 한 마리가 약 0.5 ml의 혈액을 흡혈한다고 한다. 둘째는 기계적 출혈이며 십이지장충이 장점막의 한 곳에서 흡혈 한 뒤 다른 곳으로 옮기면 상처에서 계속 출혈이 된다. 셋째는 십이지장충의 독소가 흡수되어 적혈구의 용혈을 일으키므로 일어나는 빈혈이다. 일반적으로 40마리 이상이 기생하면 빈혈상태가 일어난다고 한다.

철분의 필요량은 손실량, 성별, 생리상태 및 성장속도 등에 따라 다르다. 정상인은 1일 약 1.0mg의 철분이 상실되며 출생시 인체내 철분은 약 300mg정도 저장되며 20세 이상의 성인남자는 약 5,000mg 15세 경의 사춘기여성은 약 3,500mg을 체내에 저장하여야 한다.

철의 1일 필요량에 대하여 미국 R.D.A에 의하면 영유아는 1일에 6.0—15.0mg, 생후 1년경에 체중 1kg당 1.5mg을 권장한다. 그리고 성인에 대해서는 1일 남자 10.0mg, 여자 18.0mg을 권장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인 영양권장량은 남자 10.0mg, 여자 13.0mg을 권장하고 있으나

日本에서는 여자는 남자의 약 3—4배의 철량이 필요하다고 권장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 여성의 권장량은 18mg이상으로 증가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그리고 철결핍의 요인으로 장관내에서의 흡수율이 크게 문제되므로 철분의 흡수율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식이중의 철분의 흡수율은 그 화학적 형태, 위장의 생리적 상태 등에 영향을 받으나 일반적으로 식물성식품 보다 동물성식품의 흡수율이 높다.

앞으로 학교보건사업의 활동을 크게 개척할 시기가 도달한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의 학교보건사업은 기생충검사 혈액형검사 등에 치중하였으나 좀더 그 활동 범위를 확대할 때가 왔다고 본다. 우리가 지금까지 관심을 별로 갖지 않았던 학생들의 빈혈검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기생충검사를 위한 대변검사에 그치지 말고 소변의 단백질 검사를 실시하여 신장염(잠재성 또는 활동성)을 조기 발견할 필요도 있고 영양에 대한 계몽지도와 학교급식의 강화도 필요하다고 본다.

참고문헌 : 지면관계상 참고문헌의 게재를 생략함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에서 계속〉

環境保全法の 諸規定을 違反하였을 때에는 特別히 汚染 排出施設 設置, 排出施設의 檢査를 받지 아니하고 操業하는 者, 移轉命令을 違反한 者, 不合格 車輛을 製造輸入한 者는 3年 以上の 徵役 또는 1500萬圓의 罰金을 課하며(第66條) 其他 違反 事例에 對해서도 徵役 또는 罰金을 課하도록 되었다.

16. 關係法과의 關聯性

環境保全法은 他法과 密接한 關聯性이 있다. 環境保全을 위해서는 이들 關聯法과 抵觸되는 部分이 적지 않다. 例를 들어 國土開發綜合計劃法, 河川法, 都市計劃法, 都市建築法, 下水道法,

上水道法, 工業團地造成法, 汚物清掃法, 開港秩序法, 海上法, 水産保護法, 山林法, 國立公園法, 外資導入法, 食品衛生法, 農藥管理法, 道路運送車輛法 等等 여러 部分의 調整이 必要하게 된다.

特別히 1977年 12月에 通過된 海洋汚染防止法은 環境保全法과 같이 沿近海上에 放出되는 廢油, 汚物廢棄物을 禁止 規制하여 自然을 保護하고 魚族資源을 保護하기 위한 것으로 河川 臨海都市와 工場海上施設의 汚染行爲를 規制한 것으로 環境保全에 效果를 가져올 수 있는 새로운 政府의 調期的인 對策을 表現한 것이라고 生覺된다.